

주권의 관점에서 본 “민국” 개념의 변화: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김동택*

이 글은 대한‘민국’의 “민국”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에서도 민국 개념이 자주 사용되었지만, 근대 개항기 다양한 서구 개념어의 수용 과정에서 민국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의미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민” 개념과 “민국” 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이 용어가 주로 왕권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위민(爲民)을 뜻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고종을 계몽 군주로 규정하고 그가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때 사용한 민국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으며, 이것은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민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이 연구는 조선 시대의 민국 개념과 대한민국의 민국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첫째, 현재의 민국 개념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이는 개항 이후부터 전개되어온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를 바꾸어보려는 지속적인 대중적인 논의의 결과물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항 이후 지배층의 논의를 보면 왕이 중심이 되는 민국, 즉 군주권 강화를 통해 왕과 민 사이에 어떠한 특권적인 중간 지배계층의 존재를 거부하고자 했던 고종, 이런 군주권을 부정할 힘도 의사도 없었던 보수 관료 세력, 그리고 왕을 상징적 존재로 위치시키고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갖고자 했던 개화 관료 세력이 권력 투쟁을 전개했고 이런 갈등은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홍정헌법) 구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권이 일본에 박탈당한 이후 조선(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한민족에게 정신상으로 전승되었다는 주장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은 정체론적으로 민국(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었다. 넷째, 인민 주권에 입각하여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논의는 3·1운동을 계기로 한반도와 전 세계 한국인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민주공화정이 성립되었다. 다섯째,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치체제(임시정부들)들은 왕정복고가 아닌 인민

* 서강대학교

주권과 민주공화정을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에 왕과 관료들이 자주 사용했던 민국의 개념은 왕권을 전제로 애민, 위민, 특권계급의 부정을 지향했던 개념이었던 것에 반해 애국계몽기 이후 급속히 확산된 민국 개념은 인민주권 개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1919년 이후부터 사용된 민국의 개념은 왕권을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 완전히 다른 개념, 즉 민주공화제를 의미하였다. 결과적으로 민국 개념은 일정한 역사적 단절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개념이 포괄하는 의미가 완전히 변화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위민, 민국, 주권, 왕권, 민주공화정

I. 서론

개념은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구체성을 획득한다(나인호 2011, 16-17).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개념사 연구들은 지금까지 서구 사회과학의 개념적 수용은 개화기부터 시도되어왔는데¹⁾ 번역, 재해석, 새로운 조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대적 개념들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민국 개념의 역사적 경로와 의미의 변형 그리고 현재성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조문²⁾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획득된 역사적 결과물이다. 학계나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기원하는지 아니면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부터 기원하는지(소위 건국절)에 대하여 저마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민국”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 변화의 본성은 무엇인지를 추적해봄으로써 민국 개념이 갖는 특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해오면서 국가 사이에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조약은 주권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때까지 조선에서는 없었던 서양의 다양한 개념들을 번역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약’이나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었

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4; 2006; 2007; 하영선 외 2009. 참조

2)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다. 그런데 서양의 국가간체제의 규범이었던 조약체결과정에서 새로운 규범과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 시기부터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이 번역한 개념어들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인 번역이나 해석을 통해 그리고 기존 한자어의 새로운 조어 과정을 거쳐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세동점의 정세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개념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에 익숙한 한자를 이용하여 서구의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들이다. 기존 한자 문화권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서구에는 존재했으며 서구의 그것을 한자를 이용하여 새롭게 만든 개념들로는 주권, 민권, 인권, 민주, 민족, 국민, 공화정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서구에도 존재했고 한자 문화권에도 존재했으며 비슷한 맥락을 가진 개념들이 그것들인데, 예를 들면 경제라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economy나 경제라는 개념은 인간 집단과 사회적 삶의 재생산과 관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영어의 economy는 19세기 무렵 유럽에서 한계효용 학파의 출현을 계기로 재화와 관련된 용어로 그 의미가 바뀌었고 학문적으로는 돈, 가치, 화폐와 같은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재理財(學)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도 했으나, 개념의 경쟁을 거쳐 경제(學)를 사용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한자어로 된 단어가 존재했고 지금도 사용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국민, 동포, 민국과 같은 개념들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국인 혹은 국민, 동포, 민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오늘날 그 의미는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어의 수용 과정에서 민국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한자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 민국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해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조선 시대에 “민”의 등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조선에서의 민 개념과 민국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김백철 2007). 이어서 고종이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들려는 시도하에 민국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다는 이태진과 한영우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이태진 2011; 한영우 2017, 4편 7장 4).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민국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대한“민국”의 민국 개념이 조선시대의 민국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이태진은 대한제국기에 고종이 자주 사용한 민국개념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민국 개념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황태연은 대한민국의 ‘민국’이 1912년에 선포된 ‘중화민국’의 ‘민국’에서 영향받은 것³⁾ 혹은 미국식 민주국가에 영향받은 것이라는 시각⁴⁾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해석을 ‘비자주적’, ‘사대주의적’인 것이라고까지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민국’이라는 말은 일찍이 영·정조 시대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일반 백성들이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민국은 백성의 나라, 국민국가로 사용될 수 있으며(황태연 2015), 대한제국기에는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일반백성의 집회와 일간신문에서도 자주 쓰일 정도로 널리 대중화된 자생적 한국어였다고 설명한다(황태연 2015, 45; 이태진 2011). 민주주의의 성립에 주목하여, 19세기 말 활동했던 독립협회나 독립협회가 개최했던 관민공동회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혹은 시민 민주주의

3)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의 글들이 거론되고 있다. 박찬승 (2013, 137), 서희경 (2012, 72 각주 40), 김희곤 (2008, 59-60), 이천민 (2013, 90-94). 이완범(2008, 64)은 중화민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민주국가로 이해한다.

4) 정치학계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지식체계로서의 정치학은 해방 후부터 진행되어왔다’(민준기 외 1982)고 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립에서 미국은 이념적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고 있다.

라 부를 수 있는 전범이었으며 이것이 한국 민주제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서희경 2006). 이에 대해 조선시대 민 개념이 왕조의 공공성 문제와 결부되어 자주 사용되었지만 이를 현재와 같이 주권과 관련된 의미의 민주공화제로서의 민국개념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민국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경향을 요약하여 김백철은 조선 왕정의 민국이 대한민국의 민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했으며, 이영재 또한 이에 대한 대답을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있다(이영재 2013, 79; 김백철 2024, 220-221).

이 연구는 ‘민국’이라는 개념이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이면서 동시에 기존 연구들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완의 필요성을 남겼던 논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특정 개념의 경우 텍스트 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역사적 제도나 이념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⁵⁾ 특히 여기서 분석하려는 ‘민국’ 개념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정치나 사회의 세력 관계나 권력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 논문은 민국 개념이 단순한 텍스트 분석이 아닌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적절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이 사용했던 민국 개념과 임시정부가 수립했던 대한민국의 민국 개념 사이에는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왕권에서 국민주권’으로의 역사적인 단절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5) 개념사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코젤렉 (2010, 서론)을 참조.

II. 조선의 민국론: 통치 대상으로서의 ‘민’의 나라

조선의 민국 개념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민국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17세기 후반 이래로 출현하였으며 특히 전후 복구과정과 이른바 국가재조가 추진되었던 영정조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했다(김백철 2007). 이 연구에 따르면 민국이라는 용어는 특히 영조가 균역법과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했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겪은 후, 인구감소, 전답의 황폐화, 부세체계의 혼란으로 인해 재정이 급속하게 축소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세원이 되는 토지에 대한 조사와 양안의 재작성, 세금을 감당할 인구의 확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제도의 확립 등 다양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먼저 제시된 해결책이 공물 수취를 합리화하는 대동법의 채택이었다.

가장 먼저, 공물 수취를 합리화하려는 대동법이 10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이정철 2010, 49-50). 공물은 본래 현물로 바쳐야 했는데,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부과되거나 부과되는 세액의 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기준으로 납세액을 책정하고, 현물대신 일정한 양의 곡물이나 면포로 바치게 하는 것이 대동법이었다. 대동법으로 납세한 곡물이나 면포는 정부가 필요한 현물을 구하는데 활용하였다. 대동법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 토지 규모에 근거하여 곡물로 조세를 수취라는 방식은 조세 부담자에게 비교적 예측 가능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었다(김재호 2016, 132-137).

이처럼 진상에 따른 폐해를 대동법으로 해결한 다음 조선 정부는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용에 해당하는 역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재정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⁶⁾ 숙종 30년(1704)에 군역을 현물로 바치되 그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감필론(減疋論)이 채택되었고 이어 숙종 40년(1714)에는 신분을 활용하여 역을 회피하던 자들에게도 역을 부과하는 유포론(遊布論)이 제기되었다(김백철 2007, 126).

이러한 세금 부과에서 역을 회피하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역을 회피하는 명분이 신분상의 특권, 즉 유학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가능한 조세 부담자를 늘리고자 했던 정부는 누가 역을 부담하고 부담하지 않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유학이라 칭하는 한량(閑良)이나 사대부들에게 세를 부담시켜야 한다면 왜 그래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고 따라서 신분제에 관한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조는 신분을 막론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는 호포제(戶布制)를 추진하여 했으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小民의 마음을 잃을지언정 士夫의 마음을 잃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⁷⁾. 수세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영조 24년(1748)에 구전법(口錢法)이 거론되면서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구전법은 호구(戶口)를 단위로 하는 것보다 사람 수에 따라 징세하는 인두세였기에 납세자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고 따라서 왕조 정부에 미치게 될 파장 또한 훨씬 컸다. 결과적으로 두 정책은 시행되지 못했으나 이런 논의가 반복될수록 납세의 의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즉 누가 부세를 담당하는지, 양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6) 김백철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국가의 통치대상에 점차 臣民을 齊一的 지배하는 廣義의 백성관이 대두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탕평정국에서 점차 국왕이 정점에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족들과 양민을 하나로 통합하고자하는 의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념적 근거가 황극탕평론의 ‘皇極’이며, 구체적인 기준안이 양역변통(균역법)이었다”(김백철 2007, 129).

7) 故新 府院君 文忠公臣張維之曰曰, ‘國家寧失小民之心 不可失士夫之心’ 其在長君之世尙然 況於今日耶; 『영조실록』26/06/22).

같은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영조는 사대부를 포함한 전체 백성을 납세자로 간주하려는, 즉 臣民 전체를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자하는 의도를 점차 확실하게 드러내었다(김백철 2007, 127). 왕은 조세의 부담에서 면제받는 특권층을 가능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이에 따라 왕을 제외한 모두를 민으로 규정했으며, 이것이 민, 민국이라는 용어 사용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영조 때에는 점차 왕실을 포함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대민 소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을 감당한다는 정책이 실현되었다. 조선의 특권층을 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양역변통(균역법)은 일단 세 부담 자체를 축소시키는 감핍을 통해 소민 보호를 시도했고, 부유한 피역층이 중인계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군관포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했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 축소된 정부재정을 도와주기 위해 왕실이 거두어들이던 어염세를 정부의 몫으로 할당했고, 지방 정부도 일부 부담을 감당하게 하는 재정 分定 조치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조선의 특권층인 사족들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로써 왕실, 지방정부, 부유한 양민, 사족들이 모두 일정한 부분의 손해를 보면서 소민의 보호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균역법이었다. 이처럼 균역법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나온 일종의 대타협과정이었으며, 이것을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동했던 것이 바로 왕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민으로 간주하는 것, 그리하여 조선은 왕을 제외한 민들로 구성되는 민국이라는 개념이었다(김백철 2007, 134). 영조는 백성을 동포라고 부르면서 “위로 삼공부터 아래로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부역은 고르게 해야 한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니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 너희들(유생)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볼 때는 모두가 나의 적자다”⁸⁾고 하였다. 또한 정조는「萬川明月主人翁自序」에서 군주를 달에, 백성을 무수히 많은 강에 비친 달에 비유하

고, 하늘에 하나뿐인 달은 바로 군주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태진 1992, 245). 영조와 정조에서 나타난 ‘민국’은 군민 일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위민의 궁극적 실현, 왕과 민 사이에 어떠한 특권층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절대적인 군주의 모습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국의 민 개념이 왕과 민이라는 대비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체 백성을 강조할 때 민국이라는 용어보다는 민인이라는 개념이 더 자주 사용되었으며 토지 곧 국가는 ‘민국’으로, 인민은 ‘민인’으로, 정사는 탕평정치로 규정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한승연 2012, 67). 이 연구에 따르면 민, 백성, 동포, 민인은 통치의 대상인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개념이며 18세기 무렵 백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민국보다 민인이 더 자주 사용되었음을 그리고 민국은 통치의 대상인 영토나 나라를 칭하는 개념으로 더 자주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태진은 개항기에 고종이 민국 개념을 활용하여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민국’ 개념을 조선의 통치 이념이자 ‘백성의 국민적 성장’과 이에 대한 ‘탕평 군주의 대응과 수용’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 해석하였다(이태진 2008, 194). 아울러 그는 고종이 영조와 정조를 본떠서 스스로 계몽 군주로 규정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유사하게 한영우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고종을 계몽 군주로, 대한제국을 근대국가로 규정하였다(한영우 2001, 74-78 & 2006, 35-36). 이러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황태연(2015)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국 개념이 백성들의 ‘국민 형성’ 또는 ‘민(백성)의 국민화’라고 설명한다. 조선 후기에 ‘신분 향상과 신분 해방에 따른 백성들의 공무 담임과 참정 의지의 발아와 성장’이 나타났으며 이는 공자가 꿈꾸던 자유평등한 백성들의 ‘자치 자안 자현(自顯)의 개시와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8) 自三公下至士庶 則此均役也 民吾同胞 物吾與也 自汝等視民 則雖有人吾之別 而自予視之 均吾赤子(『영조실록』26/07/03).

즉 조선시대의 민국이라는 용례의 사용은 맹아적 형태로나마 스스로를 근대적 의미의 ‘국민’을 뜻하는 것이라 본 것이다(황태연 2015, 74). 이러한 추세는 19세기에 다양한 민란, 민회, 향쟁을 통해 백성들이 직접 공무 담당까지 요구하는 국민화과정을 겪으면서 백성을 위한 왕정에서 백성에 의한 왕정이라는 일종의 국민형성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공식 신분제인 양천제하에서도 양인이면 모두 과거를 볼 수 있게 했지만 실지로 과거를 볼 때까지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양인이라도 양반이 될 기회를 누리지는 못했다. 또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를 배출한 양반들은 세습적으로 그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렇지 못한 양인계층은 세습적으로 양반이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 법적인 규정으로 보면 조선은 처음부터 노비를 제외하면 양반이 될 수 있었지만, 조선의 역사적 현실은 사농공상의 신분제를 통해 신분의 변동을 엄격하게 막았다. 나아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필자는 조선 후기에 발견되는 민국 개념의 활용이 맹아적 형태로나마 존재하다가 개항기를 거치면서 근대적 국민의 형성과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조선의 민국 개념과 근대 국민과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한 바 있다. 이영재(2013)는 18세기 영정조 시기 ‘민국’ 이념이 근대공화제적 해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민국’은 조선 왕조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였고 왕조 국가가 유지되는 기반이 공공성이며 그 핵심이 ‘민국’ 이념이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가능하지만 이를 곧 인민주권 혹은 인민정체론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영재 2013, 79-80). 김백철 또한 최근 연구에서 조선의 민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별도의 연구과제임을 밝히고 있다(김백철 2024, 220-221). 이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다음 장에서 조선 후기에 활용되었던 민국 개념이 개항기 이후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Ⅲ. 개항기의 민국론: 누가 주권자인가?

개항기에 들어서면서 조선 왕조에서 논의되었던 민국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지형 위에서 전개되었다. 조선은 동아시아 세계질서인 중화 체제하에서 조공책봉 체제 속에서 존재해왔다.⁹⁾ 조공책봉체제는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거의 500년 동안 지배해온 체제이다.¹⁰⁾ 조선의 경우 사대자소의 질서가 지배계급 내에 내면화되어 책봉과 조공이라는 틀 안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왕조에서 민국 개념은 주로 군주와 민의 관계 설정 속에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개항이후 외국들과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주권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조약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서구의 다양한 정치적 개념들을 번역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민국 논의는 서구의 국제정치에 상응하는 위치를 지닌 국가간 체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조선의 위상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즉 이 시기의 민국론은 국가체제, 주권론, 정체론, 정치체제론 등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조선에서의 민국론과는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은 주로 중국과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서적들, 다양한 유학파 및 해외 파견 관료들을 통해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해외

⁹⁾ 조공책봉체제에 대한 분석은 손병규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손병규 (2017) 참조

¹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영진 2016, 249-279) 참조.

문물을 번역하기 위해 설립한 동문관은 마틴이 미국인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 of International Law(1836)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만국공법』을 간행(1864)하였고 독일 국법학자 블룬츨리(Bluntschli)의 Das Moderne Völkerrecht을 『공법회통』으로 번역하여 1880년에 간행했다. 블룬츨리(Bluntschli)의 Allgemeines Staatsrecht는 양계초가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飲氷室文集之十三, 頁 71-72. (1903)으로 번역하였는데, 정인호는 이를 『국가사상학』(1908)이란 이름으로 증역하였다(김효전 2000, 464). 『만국공법』은 1896년 학부 편집국에서 공식 출판했지만, 개항 직후인 1880년대에 중국의 번역본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김용구 1997, 187). 또 『충서견문』, 『조선책략』, 『이언』 등 세계정세를 소개한 중국의 책들도 소개되었다(『승정원일기』, 1882.10.07: 1881.03.23).

고종은 갑오개혁이나 독립협회가 요구한 참정권에 대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의회의 설립을 요구하는 독립협회의 헌의 6조를 두고 차라리 왕을 폐위하고 공화제를 하라고 반박하였다. 결과적으로 독립협회는 고종에 의해 해산되었다. 독립협회가 군신동치라는 전통적인 정치적 수사를 통해 소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요구했음에도 고종은 이를 공화제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탄압했다. 다만 고종은 황제들이 지배했던 당시의 세계적 추세와 국제관계에서 주권의 존재로 스스로의 권력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 민국 개념을 즐겨 사용했던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여 황제 절대권의 구상을 명문화시켰다. 그는 아관파천 이후 기존 내각의 해산을 명령하고 “지난날 3년 전에 시행한 내각제는 다 ‘역적 무리들이 나라의 권한을 농간질하고’ ‘명령을 위조한 것’으로...의정부로 고쳐 부를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 정하는 典則은 바로 옛 典章을 따르면서 新規를 보탠 것으로 무릇 民國에 편리하고 마땅한 것에 관계되는 것은 짐작 절충하여 반드시 행하는데 힘써 달라 “고 했다(『高宗皇帝實錄』 권 34, 고종 33.9.24). 이때 조선을 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백성들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종은 현실 정치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했다. 1896년 9월 칙령 제1호로 발표한 의정부 관제는 ‘대군주 폐하가 모든 정사를 통솔하여 의정부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대한국국제를 발표하면서 대한제국의 선포를 통해 황제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완성하였다.¹¹⁾ 또 의정부차대규칙을 정해 의정 이하 각부 대신들은 매일 2명씩 황제를 알현해야하고 황제나 황태자는 언제든지 의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오연숙 1996). 대한제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황제 권력의 절대화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였다.¹²⁾ 그 결과 1900년대 초가 되면 대한제국 내부에서 황제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조선의 정치체제와는 크게 다르다. 본래 조선의 정치체제는 양반과 왕의 연합에 의해 강력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대한제국은 황제가 잔통적인 양반관료층들을 모두 제거했다. 결과적으로 황제의 권력은 강화되었으나 권력의 기반은 대단히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었다(김동택 2001). 정치적 도전자들을 배제함으로써 황제권의 절대화는 이루어졌지만 역설적으로 그 권력의 기반은 매우 취약해졌던 것이다. 왕권 혹은 황제주권을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는 일본이

11) 1899년 8월에 반포된 대한국국제의 전문 9조를 보면,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국이며, 정치체제는 전제정치체제이며, 군권은 무한하며 공법에 이르는 자립정치이며, 군대 통솔, 계엄 및 해엄권, 각종 법률 제정, 반포와 집행, 법률에 근거한 국내법 개정 권리, 사면 등 공법상의 권리, 행정부 관제 제정, 개정, 칙령 발표권 등의 공법상의 권리, 문무관의 임면, 작위 등을 수여 체탈하는 권리, 외교와 관련된 업무관장 등 공법상의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있다.

12) 1900년 3월 황제가 직접 통제하는 원수부 관제를 개정하였고, 육군 헌병 조례를 공포하여 육군 헌병을 황제가 직할하는 원수부에 편입시켰다. 황실의 궁내부 관제를 공포하고 지방 군대를 재편하여 정부 공식기구들을 황실기구 산하 조직으로 재편하였다. 궁내부의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고(조재곤 1996) 정부 재정은 궁내부의 내장원이 정부기구인 탁지부를 압도하였다(이영학 1991, 327-343), 1901년에는 황실 직속의 경위원이 황실 수호를 목적으로 창설되었고, 정부의 경무청은 민생치안에 국한된 임무를 담당하였다(차선혜 1996, 98).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을사조약(한일협상조약)과 1907년 고종의 퇴위, 순종의 즉위, 한국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次官)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한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이처럼 고종은 영정조의 유훈을 활용하여 민국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는 주권자로서 황제의 절대적 권력을 추구하되 그 권력을 신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근대적 주권 개념과 전통적인 위민을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과 대한의 주권자로서 고종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가운데 개항기 정치세력의 한 축이었던 개화파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개화파들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하여 서구의 정치체제들을 소개하면서 입헌 정체가 좋지만 인민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¹³⁾ 이런 논리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¹⁴⁾ 개화파들의 정치 단체였던 독립협회의 입헌군주제 논의에서도 이 논리는 반복해서 나타났다(신용하 1988, 61). 독립협회는 군주제를 인정하되 입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입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발견하기 힘들며 특히 인민주권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백성마다 얼마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아무라도 빼지 못하는 권리요”(독립신문 1897/3/9)라고 하여 천부인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무런 지적인 훈련도 받지 못한 이들을 갑자기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¹⁵⁾ 결국 일반 백성

13) “지금 이 입헌 정체는 민선을 본으로 삼아 일체 그 뜻을 따르기 때문에 국중의 현능한 자는 누구나 그 의원이 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나아가 재상에 이를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입헌정체의 제 일 이익이다. 그러나 인민이 지혜가 없으면 함께 의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인민들의 지혜가 많아서 국가의 치란과 득실의 연유를 안 다음에야 이런 일을 거행할 수 있다”(『한성순보』1884.01.30).

14) “인민의 지식이 부족한 나라는 졸연히 인민에게 국정 참섭하는 권리를 허함이 불가한 것이라..... 국중에 대란의 씨를 낳게 됨으로 군자는 인민을 교육하여 국정참여하는 지식이 있는 다음에 정체를 의논함이 적절하니 정체가 있는 연후에 그 나라의 개화를 기도할 지라”(유길준 1895, 152).

에 의한 입헌, 입법, 인민주권은 시기상조이며 이들로 구성되는 하의원은 당장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급한 것은 독립협회를 주축으로 한 소수 지식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상의원이며 상의원이 헌법과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이 요구했던 중추원 관제 개혁이나 의회제에 대한 구상은 의회제나 입헌군주정이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관련 기사(『독립신문』1898.04.30)를 보면 의정부의 의정을 의회제로 본다거나 의회를 모든 신분들의 회의라고 언급하였는데(The Independent, November 1th, “An Assembly of all castes”)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는 인민주권이 아니라 기존 정치 질서에 독립협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화파들의 민국에 대한 정치적 구상은 신민을 국민으로 규정하거나 인민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왕정에 개화파들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는 입장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대한제국이 성립하고 난 뒤인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등장한 다양한 근대 정치체제 논의에서도 지속되었다. 계몽 지식인들은 군주정 또는 왕권을 인정한 입헌군주정인 흥정헌법이 당면한 정세에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황제의 권력이 일본의 간섭에 의해 결정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한 1905년을 기점으로 민간 수준에서 계몽운동 및 각종 사회단체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제국 내에서 황제권력이 공고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상징적이거나 여전히 황제가 존재했던 까닭에 다양한 계몽운동 단체들도 왕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헌 논의에 머물고 있었다. 이는 일제에 의해 왕권이 약화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한

15) “무식한 세계에는 군주국이 도리어 민주국보다 견고함은 고금 사기 구미 각국 정형을 봐도 알지라...중략...우리나라 인민들은 몇 백 년 교육이 없어서...(중략)...이러한 백성에게 홀연히 민권을 주어서 하의원을 설치하는 것은 도리어 위태함을 속하게 함이라...(중략)...사오십년 진보한 후에나 하의원을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다(『독립신문』1898.07.27.).

제국 혹은 황제의 주권 자체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맥락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못지않게 인민주권에 대한 지식인들의 거부감 내지 보수성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1905년 5월 24일 창립된 헌정연구회는 흥정헌법의 실시가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선언했다(『황성신문』1905.05.25.). 1906년 4월 14일에 발족한 대한자강회와 뒤이은 대한협회도 유사한 흥정헌법 형태의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황제는 황제 절대권을 주장했고 개화파들과 지식인들은 군신(민)동치를 주장했지만, 어느 쪽에서도 주권을 가진 국민,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은 수용하지 않았다(김도형 1994, 95-100).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보면 황제가 “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절대 왕권을 추구했으며 이때의 민도 통치대상으로서의 민을 의미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IV. 제국에서 민국으로: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

고종과 개화파, 보수파와 개화파를 막론하고 대한제국기의 정치 엘리트들은 모두 누가 조선의 주권자인가라는 질문에 군주가 주권자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였다. 고종과 독립협회는 대한제국의 선포를 전후로 정치적 연합을 한 이후 고종에 의해 독립협회가 해산될 때까지 그 연합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종과 독립협회의 정치적 연합이 붕괴되는 결정적 계기는 결국 국제 혹은 정체를 두고 서로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고종은 절대적인 군주의 권력을 추구하고였고 독립협회 및 이들과 결합한 관료들 가운데 일부는 일종의 입헌군주제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획득

하고자 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소위 개화관료, 독립협회의 지도층, 그리고 이들을 계승한 대한제국기의 계몽운동기에 등장한 지식인 단체들은 결코 인민의 주권을 인정한 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 주권은 인민에게 속한다라는 견해를 간접적으로나마 제시한 것은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대한매일신보의 논의는 그 이전까지의 주권체 논의와는 완전히 단절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1908년 7월 3일에 대한매일신보에서 국민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즉 국민이라는 것은 “국가의 운영원리에 대해 동의를 하는 국가의 구성원들, 주권을 가진 인민들”이라는 것이다(『대한매일신보』1908.07.03.). 이후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국민이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국민이라 하는 명목이 민족 두 글자와는 구별이 잇거는... 민족이란 것은 다만 같은 조상의 자손에 매인 자이며 같은 지방에 사는 자이며 같은 역사를 가진 자이며 같은 종교를 받드는 자이며 같은 말을 쓰는 자가 곧 이 민족이라 칭하는 바이거니와 국민이라는 것을 이와같이 해석하면 불가한지라 대저 한 조상과 역사와 거주와 종교와 언어의 같은 것이 국민의 근본은 아닌 것이 아니지만 다만 이것이 같다하여 문득 국민이라 할 수 없나니...민족을 가리켜 국민이라 함이 어찌 가하리오. 국민이라는 자는 그 조상과 역사와 거주와 종교와 언어가 같은 외에 또 반드시 같은 정신을 가지며 같은 이해를 취하며 같은 행동을 지어서 그 내부에 조직됨이 한몸에 근골과 같으며 밖을 대한 정신은 한 영문에 군대같이 하여야 이것을 국민이라 하나니라”(『대한매일신보』, 1908.07.30.).

「국민과 민족의 구분」이라는 위의 기사에 따르면 민족은 인종이나 국민과는 다른 실체로 규정된다. 지금도 논쟁적이지만 민족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애매하게 서술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해서도 주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서술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서술된 민족 개념의 애매성

은 역설적으로 민족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 혹은 개념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민족과 국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대중매체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 개념들의 의미와 유사하게 특정한 인간집단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족민이라는 단어이며, 다른 하나는 인민이라는 단어이다. 족민이라는 단어는 유길준의 『정치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족민은 종족이 서로 같은 일정한 인민의 무리를 말함이고 국민은 같은 나라에 거주하는 일정한 인민의 갈래를 말한다. 족민은 인종학상의 의미로서 법인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국민은 법률상의 의미로서 법인의 자격을 갖는다.”(유길준 1988, 41-45).

위의 인용문에서 족민은 앞서 설명한 대한매일신보의 민족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유길준은 이것을 학문적 규정으로만 설명할 뿐 당시의 정세와 관련시켜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유길준은 이후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조선유학생친목회회보』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다만 이 회보에서 민족은 인간 혹은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었다. “邦境을 限하여 민족이 집하며.....우고안락의 地에 入함은 민족의 고유한 본심”(『대조선유학생친목회회보』1897.12, 57)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대조적으로 『독립신문』에서는 민족이라는 용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황성신문』의 경우 몇 차례 등장하지만 동방민족·동아민족·백인민족과 같이 인종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황성신문』1900.01.12.).

이후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국민과 민족의 사용빈도수가 현격히 증가하였다.¹⁶⁾ 1907년까지 민족이란 용어는 한자어와 한글을 사용할 경우 그 의미

16) 대한매일신보에서 나타난 국민과 민족 용어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글의 경우 민족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도 낮았으며, 그 의미도 일반적인 사람이나 백성을 의미하는 “이천만 민족”과 같은 용례로 사용되었다. 한문의 경우 민족이라는 단어의 사용빈도도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의미 또한 현재와 같은 의미, 즉 인종적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는 인간집단으로 사용되었다.(『대한매일신보』 1907.02.06.).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곧 없어지고 1908년부터는 한문판과 한글판 모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민족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그것이 갖는 개념적 함의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나 사설은 점차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를 주권 문제와 결부시켜 국가의 주권이 왕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인민’ 또는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다(김도형 1994, 425~428).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주권이 황제에게 있다는 점은 황제 스스로 대한국 국제를 통해 밝힌 바 있고, 실제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보호국화되기 전까지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보호국화가 진행된 다음에는 기존 황제권을 반대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권과 관련된 논의는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국혼, 국가의 정신, 민족혼과 같은 용어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당시 대중매체에서는 한국인,

표 1)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국민’ 의 출현 회수(김동택 2008, 414)

	1904	1905	1907	1908	1909	1910
국민 출현 회수(국한문판)	76	171	243	324	418	319
국민 출현 회수(한글판)	없음	23	127	310	425	271

표 2) 대한매일신보에서 민족 용어의 출현 회수(김동택 2008, 415)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민족(국한문판)	없음	26	47	139	126	79
민족(한글판)	1	없음	1	135	155	117

조선인이 한민족 혹은 하나의 혈족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영조가 사용했던 동포라는 개념도 흔히 사용했다(권보드래 2005, 268).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감시하에서도 인민주권을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즉 추상적인 용어들로 국왕 혹은 황제가 아닌 새로운 주권체를 상상하게 하였다. 동포, 민족, 정신으로된 국가, 민족혼, 국수 등의 용어가 그러한 사례들이다. 대한매일신보에서 수많은 빈도로 출현한 이 용어들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 즉 주권을 가진 인간집단을 상상하는데 활용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 체제 즉 대한제국의 붕괴 이후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개념적 대체물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후 1910년 대한제국이 붕괴한 이후 민족, 동포 등의 담론은 일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보다는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확대 논의되었다. 국체와 정체의 변동과 관련된 논의는 1910년 이전인 1907년, 대한제국의 주권 일부가 일본에 의해 장악된 이후, 일본제국주의와 황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다양한 정치체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해외 한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한국의 “민국” 즉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은 세계적인 맥락에서 해외 한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붕괴되기 이전부터 인민주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온 움직임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국내의 인물들과 협력하여 만든 신민회를 통해 인민이 주권을 지닌 국민국가, 공화제를 주장하게 되었다.(『한국독립운동사』, 1023-1026). 가장 본격적으로 인민주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미주 한인매체들이었다. 미주 한인 대중매체인 『新韓民報』는 군주와 국가를 구별해야하며, 한국인들이 나라가 망해 주권이 없어져도 군주에게 복종만하면 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新韓民報』 1909.03.31.). 충군과 애국은 구별해야 하며, 특히 군주가 자신의 이해와 안락을 위해 국가와 백성을 외국에 넘길 경

우 그 백성은 충군과 애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共立新報』 1908.03.04)

1907년 4월에 국내와 미주 한인 지도자들이 창립한新民회는 황제권을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정치체제를 지향했으며 언론, 교육, 무장투쟁 등을 통해 이후 민주공화국, 혹은 공화제가 임시정부의 헌법에 수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新民회의 창립에는 국내 인물을 물론 미주의 한인들도 포함되어있었는데 이들이 발간한 대중매체는 『대한매일신보』에서 흔히 사용되던 용어인 ‘민족혼’, ‘정신으로된 국가’, 그리고 무형으로 된 국가를 떠올리는 “無形國家”론을 주창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한반도 내에서는 명시적으로 천명하기 힘들었던 내용으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만들어져야할 새로운 정부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정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주를 포함한 재외 한인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민주공화정의 실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미한인 신문인 『共立新報』는 국권이 아직 붕괴되기 전에는 전제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민주공화국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점차 상실하게 된 원인은 그토록 자주 지적되어온 것처럼 “전제정치의 폐습”(『共立新報』 1908. 12.09)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체 정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권이 점차 상실되었음으로 새롭게 국가가 만들어져야하며 새로운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립신보는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헌법을 정하고 대의정치를 실행한 연후에 참 국민”(『共立新報』, 1908.04.22.)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을 제정하는 ‘입헌주의’와 선거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것이다.

또 다른 재미 한인단체인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6월부터 대한제국

이 어떻게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처럼 국권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주권을 군주가 가졌기 때문이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본과 한국이 논의하고 있는 소위 합방조약은 “융희황제가 일제에 투항”한 것, 따라서 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이후 주권은 명백하게 대한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매일신보가 주장했던 것처럼 주권을 가진 민족 즉 국민이 스스로를 위한 정부 즉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29일 일본과 대한제국의 합방이 공식화되자 본격적으로 임시정부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재미교포들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대한 국민을 총히 대표하여 공법상에 허한 바 가정부(假政府)의 자격을 의방(依倣)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삼대기관을 두어 완전히 자치제도”를 행하고 정식 국가로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와 병역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김도훈 1999, 257). 1910년 이후 주요 재미 한인들의 기관들인 대한인국민회, 공립신보, 대동공보가 통합하여 대중매체인 『新韓民報』를 설립하였다. 박용만(朴容萬)이 통합기관지인 신한민보의 주필이 되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한매일신보의 ‘정신으로 된 국가’, 공립신보의 ‘무형국가론’을 떠올리는 논설을 실어 새로운 국가의 필요성과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하였다. 그는 “토지와 백성을 기초로 법률과 정치로 집을 지어야 국가가 성립되나, 토지가 없어 남의 토지 위에 집을 지으니 無形國家”(김도훈 1999, 258)라고 하면서 국내외 한국인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해야한다고 하였다. 신한민보는 대한매일신보가 민족, 정신으로 된 국가, 민족혼, 국수 등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임시정부로 구체화하고 이를 무형국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형편으로 토지와 인민을 갖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세운 임시정부를 무형국가라 표현한 것이다. 한일합방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주권이 상실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 황제가 저항하지 않은 투항이기

때문에 군주는 스스로 가진 (군)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이 주권은 한국의 인민들이 이어받을 것이며, 이렇게 확립된 새로운 주권을 통해 무형국가 즉 임시정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실제로 박용만은 이후 19017년 대동단결선언에도 참여하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형국가, 임시정부, 국민주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설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논의가 1910년을 전후로 재외동포 기관들 사이에 점차 형성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족과 국민주권은 하나의 실체, 독립을 요구하는 실체로 정립되어갔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붕괴된 후, 재외 한인, 특히 미주 한인들이 주장했던 민주공화국의 수립은 대한민국의 수립 요구,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요구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대한제국 황제의 주권 포기, 한국 인민들의 주권 계승, 한국 인민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되어 새로운 주권국가 수립이라는 논리로 이어지며, 따라서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국체는 국민주권체, 정체는 민주공화정이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민국은 바로 민주공화정을 의미하며, 이는 명백하게 새로운 주권의 수립이라는 개념규정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은 곧 정치적 움직임으로 현실화되었다. 1917년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신규식, 박용만, 박은식, 조소앙, 신채호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14인이 1917년에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은 “1910년 한일합방은 융희황제가 삼보(三寶) 즉 영토, 인민, 정체를 포기한 날이자 한국 인민들이 그것을 계승한 날이며, 따라서 삼보三寶는 일순간도 없어진 적이 없고,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인민주권이 발생한 때라는 것, 당연히 구한국 최후의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조동걸 1987)이라고 선언하였다. 대동단결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황제로부터 국민으로 주권이 상속되었다는 것이다. 대동단결선언은 황제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삼보를 포기하겠다고 선

언한 8월 29일은 바로 자신들과 한국 인민들이 삼보를 계승한 날이며 따라서 한순간도 주권이 멈춘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들 그리고 우리들(한국 인민들)이 바로 주권의 상속자이며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한 때이며 구한국 마지막 1일이 신한국 최초의 1일이라고 하여 구체제와 신체제의 대비를 통해 한국인들이 주권의 계승자임을 확실히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한국이 민족, 즉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이를 상속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그 동안 의식적으로 회피해온 한국의 주권에 대해 군주제, 혹은 군주제의 부활을 추구했던 복벽주의와의 단절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대동단결선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개적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민이 상속한 주권을 실현할 기관으로 먼저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제1차 통일기관”이며 이들이 곧 “제2차 통일국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다양한 독립운동 기관들과 국가 기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차 통일기관은 현재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여러 단체들이며 이들이 토대가 되어 제2차 통일국가를 건설해야한다는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V. 민국의 현재성: 과거와의 단절

이러한 방식으로 이론적 토대를 갖춘 “민국”의 정체론은 3·1 운동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하나의 이론내지 개념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었던 민국, 민주 공화정에 관한 구상이 현실화되는 혁명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3·1 운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반대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논의로만 존재했던 주권자의 실체가 역사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운동의 중심세력이나 선언문의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부정하는, 즉 일제의 지배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전국적 규모로 길게 이어진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요구한 바가 즉각 실현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혁명적 상황을 통해 국민국가의 성립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석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사례를 봐도 그러하다. 봉기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곧바로 프랑스에 공화정을 가져다 주었는가? 실제로 프랑스의 공화정은 그후 혁명정부 수립, 나폴레옹의 제정, 왕정복고, 제 2의 제정, 공화국의 수립이라는 거의 100년간에 걸친 정치변혁의 결과물이었다. 다양한 역사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1789년 혁명이 이후 프랑스를 국민국가로 간주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한국에서 이러한 혁명적인 역사적 계기는 바로 1919년의 3·1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당일날 서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문에 직접적인 민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요구는 없었지만 한두달 만에 서울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해외에서 다양한 임시정부 수립요구가 분출

했고, 그 내용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수립으로 수렴되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조선말과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군주의 주권이 엄연히 존재함으로 인해 인민주권, 민주공화국의 요구가 막혀있었던 상황에서 주권이 일제로 넘어가게 되자 스스로 주권자의 계승자임을 선언했던 다양한 단체들, 임정설립움직임, 일제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독립운동이 하나의 역사적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3·1 운동은 독립 국가의 건설이라는 대동단결선언의 논리를 실체화하면서 왕정이 아니라 새로운 주권, 인민 스스로 주권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 3·1 운동은 대동단결선언이 선언했던 주권의 상속에서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인민의 행동을 통해 쟁취했다는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다. 3·1 운동을 통해, 한국의 주권은 과거 주권의 양도나 전승이 아니라 과거와의 급진적인 단절을 통해 전혀 새로운 주권체가 등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는 민국 개념에서도 조선 왕들이 취했던 인민의 나라, 인민을 위한 나라에서 인민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국체상의 그리고 정체상의 급격하고도 단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민국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난 과거와의 급진적 단절은 3·1 운동을 전후로 역사적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는 인민 주권, 공화제와 같은 정치적 용어들과 분리될 수 없게 되었다. 3·1 운동의 대표적인 선언서인 기미독립선언서에 ‘조선민족 대표’ ‘民族自存의 正權’ ‘민족의 자유발전’ ‘民族的 尊榮’ ‘民族的 良心’, ‘民族的 獨立’ ‘我文化民族’ ‘民族的 要求’ ‘民族的 精華’ ‘民族의 正當한 意思’와 같은 표현들은 1900년대 대한매일신보와 그 이후 신한민보 등에서 나타난 ‘국수’, ‘정신으로 된 국가’와 같은 개념이 하나의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형태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 주권, 민족, 공화제, 민주 등의 개념은 1919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후 전개될 임시 정부의 헌장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3·1운동이라는 혁명적 상황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주권과 정치체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1 운동직전 일본에서 1919년 2월 8일 재일유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에는 “...다년의 전제정치의 해독과 경우의 불행이 오족의 금일을 지하였다 하자. 정의와 자유와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상에 선진국의 범을 취하여 신국가를 건설하면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오족은 필히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있으리라.”라고 하여 현재의 식민지 상황이 전제정치의 해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민족대회 즉 조선인들의 자결을 요구하였다.¹⁷⁾ 식민화의 원인을 전제정치 즉 군주 주권으로 설명하고 민족대회의 소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민국, 즉 민주공화정체를 민족자결의 결과물로 상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인 1919년 2월 중국 길림에서도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길림에서 발표된 선언서는 김약연, 김좌진, 신규식 등 39인이 만주와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을 대표한다고 되어있다. 이 선언서는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평등복리를 대대로 자손만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에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해탈하고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한다”고 했다. 우선 자주 독립 평등 복리가 독립의 대의이며, 새로 수립될 나라는 대한민주의 자립이라고 되어있다. 민주 공화정체의

17) 결의문 2조에서 “본 단(조선청년독립단)은 일본의회 및 정부에 대하여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로써 오족의 운명을 결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범을 취하여 신 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있을 줄 믿노라”(김삼웅 2003, 124)라고 하여 민족자결을 선언하였으며 그것은 주권이 민족에게 속함을 전제로 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수립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언서는 일본을 군국전제라고 규정하면서 전제에 대한 거부는 한국, 아시아, 국제법, 인류 전체가 추구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하였다(김삼웅 2003, 120).

이같은 모습은 다른 지역의 독립선언서에도 나타난다. 훈춘의 대한국민의회(3월 20일)가 발표한 독립선언서를 보면 “대한국민의회 대표는 우리 2천만 동포를 대표하여 천하만국에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하여 그 주체가 국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참정권을 잃었으므로 인권의 대부분인 집합,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없”으며 이를 얻기 위해 “2천만 민족”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2천만 민족을 독립 주체이자 주권자로 선언하고 있다(김삼웅 2003, 137). 또한 러시아령의 니콜리스크에서 활동하던 조선국민회의는 1919년 3월 19일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발전은 세계의 평화, 세계적 민주주의의 큰 이상의 확립, 정의 및 민족의 자유스런 문명적 발전의 명목하에 인용될 수 없는 바이라고 세계의 민주주의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정대하고 엄숙한 일언을 언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단 자신들의 이름을 조선 ‘국민’ 회의라 하였으며, 조선의 독립이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러시아의 또 다른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대한국민의회는 역시 3월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를 통해 “대한국민의회는 우리 2천만 동포를 대표하여 천하 만국에 독립운동을 선언하노니”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도 스스로 국민의회라 규정하고 동포를 대표하여 독립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민의 권리인 참정권, 인간의 자유인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찾아 독립을 선언하며, 인민 참정권을 바탕으로 자유를 찾기 위해 독립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내에서는 3·1 운동 이후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몇 차례 연기되기는 했으나 결국 조선민족대회가 열려 한성임시정부의 선포를 알리는 집회가 1919년 4월 23일에 개최되었다. 여기서 발표된 선포문에

는 국체와 정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하고 있다.¹⁸⁾ 이에 따르면 국체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정이며, 정체는 대의제라고 규정되었다. 여기서 국가의 명칭은 조선으로 정해졌으나 기본적으로 그것이 민주정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발표한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에서 발표되었다.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하였으며 제4조는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했으며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했다. 이후 1차로 개헌을 하여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새롭게 정치하였는데 여기서는 3.1 독립선언서를 원용하였다(정중섭, 2002).

임시정부는 3·1 운동이 주창한 민족이 주체가 되는 정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3·1운동은 그 이전에 어떠한 형태의 인민주권을 고려하지 않았던 정치체제 논의, 구체제 유지를 거부하고 이 모든 것과 단절한, 즉 베링턴 무어가 언급했던 과거와의 급진적 단절을 만들어 냈다. 3·1 운동 이후에는 어떠한 정치체제도 인민주권 즉 민주공화제를 기본으로 하였다.¹⁹⁾ 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을 가진 평등한 인민 즉 국민의 탄생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이는 민국 개념의 혁명적 변화, 과거와의 급진적 단절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 왕들이 즐겨 사용했

18) 이때 발표된 헌법은 국체와 정체를 분리해서 정의하고 있다. “제1조 국체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함. 제3조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게 함. 제4조 임시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가짐 1. 일체의 내정 2. 일체의 외교. 제5조 조선국민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납세 2. 병역 제6조 본 약법은 정식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발표하는데까지 적용함”(우남 이승만 문서편찬위원회 1998, 26-29).

19) 이현희에 따르면 3.1 운동은 논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실적 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거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의 정치적 움직임을 제도화했다고 지적한다(이현희 2003).

던 민국 개념이 왕에 의한 민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수사였다면 대한민국의 수립을 통해 민국은 왕의 주권이 아니라 인민이 주권을 갖는 인민에 의한 주권체, 민주 공화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른 근대국가들의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경로의인 민주제로의 이행과정은 과거와의 급진적 단절 즉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한국도 이러한 경로를 걸었던 것이다. 여기서 민국 개념 또한 왕권, 군주권에 포획된 개념에서 인민주권으로의 전환이라는 혁명적 내용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민주공화정체를 갖춘 국민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서구의 근대국가 형성 및 근대 국민국가 형성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페리 앤드슨(P. Anderson)이나 찰스 틸리(C. Tilly)가 설명하듯 서구의 경우 근대국가는 절대주의 왕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영토국가로 출현했다. 앤드슨은 절대주의를 관료제, 중앙집권화, 영주들의 귀족화를 통해 농민들의 저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봉건지배계급들의 국가로 파악한다. 앤드슨의 설명은 한편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근대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계급성은 봉건적이라는 얼핏 모순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페리 앤드슨 1992, 20). 왈러스틴은 근대세계체제의 출발을 16세기로 잡고 있는바, 그는 절대주의 왕정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정치적 형태로,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Wallerstein 1974, 1장). 이러한 절대주의 국가들은 전쟁과 협상, 식민지 개척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 이른바 주권 국가들간의 정치, 즉 국제정치체제를 하나의 질서로 수립하였다(Tilly 2000, 175). 이른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성립은 17세기부터 등장하였으나 이 주권은 어디까지나 절대주의 왕정에 속했다. 이후 영국에서 이어진 권리장전으로 정치적 주권을 가진 인민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었고, 결정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국민이 만들어졌고 국민국가가 성립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

혁명으로 이어져 19세기는 유럽의 혁명과 더불어 주권을 가진 민족들이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민족주의가 대중화되는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기까지 국민이 주권자였던 국민국가의 성립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소수에 머물고 있었다. 실제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은 여전히 제국의 시대였다(홉스봄 1998, 20). 국민국가의 성립을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한 베네딕트 앤드슨은 19세기에 대중적 민족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주의 국가가 신민의 통합을 위해 시도했던 민족주의의 발전단계를 관주도 민족주의라 규정했으며(베네딕트 앤드슨 2004, 111-120) 관주도 민족주의에 영향받아 대중적 혁명에 의해 국민 만들기가 진행되었던 민족주의의 물결을 민족주의의 마지막 물결로 설명하고 있다(베네딕트 앤드슨 2004, 145). 이에 따르면 대한제국기에 민국개념을 호명함으로써 한 가족(동포), 군민일체를 강조했던 고종의 시도는 신민의 통합을 위해 시도되었던 관주도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개화관료들과 지식인들이 인민을 민권의 이름으로 동원하되 결코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던 움직임은 크레올 민족주의(베네딕트 앤드슨 1991, 89)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최종적으로 주권체로서의 민족, 주권을 지닌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국가의 형성은 1919년 임시정부를 통해 가능했다.

VI. 결론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된 민국 개념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오늘날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는 해방 이후에 갑자기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 아니며 개항 이후부터 전개되어온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를 바꾸어보려는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논의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둘째, 개항 이후 어떠한 정치체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 18세기 영조와 정조가 즐겨 사용했던 민국이란 단어를 활용하여 세 가지로 구분되는 정치세력이 대립했다. 왕이 중심이 되는 민국, 군주권 강화를 통해 왕과 민 사이에 어떠한 특권적인 중간 지배계급의 존재를 거부하고자 했던 고종이 첫 번째이며 군주권을 부정할 힘도 의사도 없었던 보수 관료세력이 두 번째이며, 그리고 왕을 상징적 존재로 위치시키고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갖고자 했던 개화 관료세력이 세 번째이다. 이들은 권력 투쟁을 전개하면서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의 구상을 내세우며 계속해서 대립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전제군주제 구상이 우위를 점하였지만 일본의 개입으로 국권을 상실하면서 대한제국의 주권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다. 셋째, 이 과정에서 군주권이 붕괴하자 주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한민족에게 정신상으로 전승되었다는 주장이 국내외의 한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는데 이들은 이후 주권을 되찾으면 한국인들이 주권을 가진 민국 즉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넷째, 인민주권에 입각하여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논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3·1운동을 계기로 한반도와 전 세계 한국인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임시정부를 통해 실현했으며, 이는 과거의 군주권에서 인민주권

으로의 이행이라는,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을 초래하는 혁명적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치체제(임시정부들)들은 왕정복고가 아닌 인민주권을 국체로 하는 정치체제를 지향했다.

개항 이후 1910년까지 전개되었던 정치변동들, 갑오개혁과 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와 독립협회 해체 등은 기본적으로 군주권을 전제로 군주 권력이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관료 권력 혹은 개화 지식인 권력이 중심이 되느냐를 놓고 전개된 투쟁이었다. 이 둘은 모두 주권체로서의 국민을 배제하고 근대국가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대한제국이 점차 일제에 주권을 빼앗기는 동안에도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으나 여기서도 황제권(군주권)의 존재는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했고 나아가 지식인들의 보수적 성향은 결코 군주권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결코 국민주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민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개화파와 계몽 운동단체들은 대한제국의 민국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군주권을 전제하고 전개된, 그렇기에 인민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한매일신보나 신민회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논의에서 나타났던 한국의 정체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주권, 즉 국체와 관련되어 인민주권이 명확히 주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10년을 계기로 군주의 주권 포기과 조선 인민의 주권 계승이라는 해석은 민주정체의 선포라는 혁명적 문제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어지는 국민주권에 의한 정치체제의 수립 논의 그리고 한반도의 광범위한 구성원들이 참여했던 3·1운동의 발발은 이후 한반도에서 성립될 어떠한 정치체제라도 반드시 인민주권의 원리, 즉 민주체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었던 정치적 상황을 초래

하였다. 조선시대에 왕과 관료들이 흔히 사용했던 민국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왕권을 전제로 애민, 위민, 특권계급의 부정을 지향했던 개념이었다. 반대로 1919년 이후부터 사용된 민국의 개념은 왕권과 단절된 인민주권을 전제하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이처럼 민국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한국의 역사에서 나타난 역사적 단절과 더불어 개념안에 내포된 내용상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25년 4월 9일 접수, 5월 11일 심사완료, 5월 11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원전>

- 『朝鮮王朝實錄』.
『신한민보』.
『공립신문』.
『한국독립운동사』제1권.
『대한자강회월보』 1906.
『태극학보』 제 12호 1907.
『대한협회회보』 1908.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論語』. 『孟子』. 『書經』. 『승정원일기』. 『日省錄』.

<단행본 원전>

- 유성준. 1907. 『법학통론』. 국민교육회.
주정균. 1908. 『법학통론』. 광학서포.
김대희. 1907. 『20세기 조선론』중앙서관. 『근대한국공연예술사 자료집 1 개화기-1910년』,
1984에 수록
羅晉. 金祥演 역술. 1974. 『국가학』. 국회도서관편.
신해영. 1908. 『倫理學教科書』. 보성중학교.
유성준. 1907. 『법학통론』. 국민교육회. 아세아문화사 1981에 재수록
李沂. 1908. “政治學 續” 『湖南學報』. 제3호.
유길준. 한석태 역주. 1988. 『정치학』. 경남대 출판부.
_____. 허경진 역. 2004(1895). 『西遊見聞』. 서해문집.

<단행본 및 논문>

- 권보드래. 2005. “‘동포’의 수사학과 ‘역사’의 감각 - 1900-04년 ‘동포’ 개념의 추이”.

- 『한국문학논총』, 41.
- 고정휴. 200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통합정부수립에 대한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13.
- 김대희. 1984. 『20세기조선론』. 중앙서관(1907). 『근대한국공연예술사 자료집 1 개화기-1910년』에 재수록.
- 김도형. 1994.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 김도훈. 1999. “1910년대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0.
- 김동택. 2001. “19세기말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균열.”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 _____. 2002. “근대 국민과 국가 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1집.
- _____. 2004. “독립신문의 근대국가 건설론.” 『사회과학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호.
- _____. 2008.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민족' 개념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원. 61집.
- 김백철. 2007. “조선 후기 영조대 백성관의 변화와 ‘民國.’” 『한국사연구』, 09 (138):121-175.
- 김백철. 2024. “조선시대 왕정상과 역사교육의 방법론 모색 : ‘국민국가’·‘민국’ 개념의 재검토.” 『한국학논집』, 0(97), pp.175-234
- 김소진. 1998. 『한국독립선언서연구』. 국학자료원.
- 김영진. 2016.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1호.
-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 동양 예와 서양 공법』. 나남.
- 김정인. 2015.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시대의 건널목, 19세기 한국사의 재발견』. 책과함께.
- 김재호. 2016.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 경제학 히치하이커를 위한 한국사』. 생각의힘.
- 김효진. 2000.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 현실.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 미야지마 히로시. 2009. “민족주의와 문명주의 -3·1 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 『3·1 운동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민준기 외. 1982. 『한국의 학파와 학풍』. 우석.
 반병률. 2004. “해외에서의 대동단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8집.
 베네딕트 앤드슨. 김형숙 역. 2004. 『상상의 공동체』. 나남.
 베링턴 무어. 진덕규 역. 1990.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까치.
 서영희. 1997. “광무정권의 형성과 개혁정책 추진.” 『역사와 현실』. 26호.
 서희경. 2006.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19): 만민공동회,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 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0집 5호.
 손병규. 1999.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군사』. 39:95
 스카치폴, 테다. 1981. 『국가와 사회혁명』. 까치.
 신용하. 2001.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신우철. 2004. “헌정사와 비교헌법(1):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임시헌장(1919.4.11)과 임시헌법(1919.9.11.)을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편. 『법사학연구』. Vol. 29.
 에릭 홉스봄. 강명세 역. 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
 외르크 피쉬. 베르너 콘체, 오토 브루너, 라인하르트 코젤렉 공역. 안삼환 역.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 문명과 문화』. 푸른역사.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편. 1998. 『이화장소장 우남 이승만문서(동문편)』. 총18책.
 윤진현 편저. 2008. 『한국독립운동사』. 상·하. 한국학술정보.
 이영재. 2013. “조선시대 정치적 공공성의 성격 변화: ‘民’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19(1).
 이정은. 2009.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이정철. 2010. “礪溪 유형원의 대동법 인식- 조선후기 개혁론의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역사학보』. 통권 206호.
 이태진. 1992. “정조의 『大學』 탐구와 새로운 군주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이회재 사상과 그 세계』, 219-270.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태진. 2015. “高宗時代의 ‘民國’ 이념의 전개 - 儒敎 왕정의 近代의 ‘共和’ 指向,” 『진단

학보』, 124.

- 이태진. 2011. “18 세기 한국사에서의 민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 이태진 김백철 엮음.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上』. 파주: 태학사.
- 이태진. 2008. 『고종시대의 재조명』. 파주: 태학사.
- 이현주. 1999. “1910년대 국제정세와 정부 수립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상)』. 국가보훈처. 88.
- 이현희. 2003. 『대한민국임시정부사』. 한국학술정보.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_____. 2007.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 잔프랑코 쫓지. 박상섭 역. 1995. 『근대국가의 발전』. 민음사.
- 정종섭. 2002. 『韓國憲法史文類』. 박영사.
- 조동걸. 1987.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 9.
_____. 1999. “임시정부의 헌법과 이념.”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 조항래 편저. 1993.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 연구』. 아세아문화사.
- 차선혜. 1996.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제16호.
- 페리 앤더슨. 함택영 외 공역. 1990.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극동문제연구소.
- 피어슨, 크리스토퍼. 박형신 역. 1998. 『근대국가의 이해』. 일신사.
- 하영선 외. 2009. 『근대 한국의 사회 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7. 『한국독립운동사강의』. (개정판) 한울아카데미.
- 한국역사연구회. 1989. 『3·1민족해방운동연구』. 창조사.
- 한승연. 2012. “조선 후기 民國 再造와 民 개념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 한영우. 2017.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 황태연. 2015.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과 의미.” 『정치사상연구』. 21(1).
- 흡스봄, 에릭. 김동택 역. 1998. 『제국의 시대』. 한길사.
- Anderson, Perry. 김현일 외 공역. 1993. 『절대주의 국가의 역사』. 소나무.
- Tilly, Charles. 2000. 『유럽혁명 1492-1992, 지배와 정복의 역사』. 새물결.

Tilly, Charles. 1994.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강압, 자본과 유럽국가의 발전』. 학문
과사상사.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System*. Academic Press.

Abstract

Title: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Min-guk" from the Perspective of Sovereignty: From Monarchy to Democratic Republic

*Dongtaek Ki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erm "Min-guk" (Republic) in "Daehan Minguk" (Republic of Korea) and examine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its meaning,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conceptual shift. The term "Min-guk" was also frequently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acquired an entirely new meaning during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Western political concepts. Existing studies suggest that the concept of "Min" and "Min-guk" in the Joseon era primarily reflected a philosophy of governance 'for the people(爲民)', where royal authority existed for the welfare of the populace. However, some scholars have interpreted these concepts more expansively, arguing that King Gojong's efforts to modernize the state can be seen as a precursor to the contemporary no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 Professor, Division of Global Korean Studies, Sogang University

concept of Min-guk in King Gojong' usage can be interpreted as a precursor to the current no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 Minguk).

In contrast,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ncept of Min-guk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its modern counterpart are fundamentally distinct. First, the modern notion of Min-guk refers to a democratic republic, a political system born from sustained and popular discussions aiming to transform the monarch-centered order that had prevailed since the enlightenment period. Secon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power struggles emerged among those who sought to strengthen monarchical authority (like King Gojong), conservative bureaucrats who neither had the will nor the means to challenge monarchy, and reformist officials who aimed to install the king as a symbolic figure while assuming real political power themselves. This conflict played out in the opposition between absolutism and constitutional monarchy. Third, following the loss of sovereignty to Japan, the idea spread that sovereignty had not been transferred to Japan, but spiritually inherited by the Korean people, leading to arguments that the new Korean state should be structured as a Min-guk— a democratic republic. Four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lls for Korean independence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culmin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subsequent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by institutionalizing republicanism. Fifth, all political entities

formed after the March 1st Movement—both within Korea and abroad—pursued political systems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rejecting monarchical restoration.

In conclusion, while the pre-modern concept of Min-guk used by Joseon kings and officials presupposed royal authority and emphasized benevolence, anti-privilege, and protection of the people, the post-1919 concept—rapidly disseminated after the patriotic enlightenment period—completely rejected royal authority. The Min-guk of modern Korea represents a conceptual and historical break, signifying a total transformation in meaning from its earlier usage.

Key words : benevolent rule, Min-guk (Republic), sovereignty, royal authority, democratic republic